

## 第 6 次 常任理事会

日時 : 1984. 10. 26 (금) 17 : 00

場所 : 本 会 会 議 室

### 제 5 차 상임이사회

#### (협의사항)

##### 1. 구급차 환자이송료 재협의

구급차의 환자이송료는 과거 10여년간 병원과 환자간에 별불의가 조성됨이 없이 징수되어 왔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를 법제화함은 성급한 조치로 사료되므로 가급적 현행대로 존속시키도록 하되, 부득이 법제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급차의 심야 출동 및 대기, 편도의 공차운행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km당 주행료외에 적정한 기본료도 반영시키도록 관계 당국과 재협의키로 하다.

##### 2. 의료보호 진료비 미지급분 재반영

의료보호 진료비는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미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말을 기준하여 재과약후 정부예산 편성시 반영될수 있도록 재건의키로 하다.

##### 3. 의료보험 진료비 조기지급 촉구

대다수의 병원이 의료보험 진료비를 법정지급기일인 30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므로서 경영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간내에 조기지급토록 정부당국 및 보험자단체에 적극 촉구키로 하다.

##### 4. 의사연구보조비 비과세 방안 강구

의사에게 지급되는 급여중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조치건의는 우리나라 세정여건과 병원의 인건비 지급실태등을 감안할때 시기상조이므로 회원병원간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계속 연구 검토에 나가기로 하다.

##### 5. 자보 계약 조건 성실히 이행 요청

본회와 10개 손보사간에 합의된 전국종합병원의

자보계약 조건을 회원병원 스스로 성실히 이행하여 의료기관의 신뢰와 품위를 유지할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키로 하다.

##### 6. 병원급의 자보단체 계약조건 협약추진

종합병원의 자보환자 계약조건은 타결 되었으나 병원급의 자보수가는 의보수가보다 저렴한 표준진료수가를 적용 지급하고 있기때문에 병원경영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므로 본회에서는 제 2 단계로 병원급의 자보단체 계약조건을 종합병원계약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협약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하다.

##### 7. 공중보건의 임상기회부여 확대건의

공중보건의의 임상 실습은 군소병원의 진료공백 해소는 물론 공중보건의의 임상실습 기회를 촉진케됨으로 중소규모 민간병원까지 확대 실시할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건의함과 동시에 본회의 견을 위협(분과학회)에도 통보키로 하다.

##### 8. 상임이사회 개최시간대 조사

본회 임원의 편의와 회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임이사회 개최시간을 재조정 검토키로 하다.

#### (승인사항)

##### 1. 89년도 국제병원연맹 총회 개최 보류

동 총회 서울개최 요청은 본회 회관건립에 따른 회원병원의 부담, 사무국업무능력, 간협 및 여의사회의 국제행사 중부등 89년도 개최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다음 기회에 개최하도록 보류키로 하다.

## 제 6 차 상임이사회

### (회무보고)

#### 1.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건의

##### 가.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 개정 건의를 위한 실무 협의

- 일시: '84. 10. 2 (화) 12:00
- 장소: 금보석
- 참석: 본회 기획실장의 1명  
의협 보험국장의 1명
- 내용: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 건의를 위한 의견 조정

##### 나.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 개정 건의(안)제출 ('84. 10. 8)

전국회원 병원의 의견을 취합, 본회 의료보험 연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차로 수가 조정 건의(안)을 제출

#### 2. 의료보험 진료비 수령실태파악 ('84. 10. 16)

- 조사병원: 101개 병원
- 망라기간: 83. 1월~'84. 8월

##### 가. 분석

- 1) 법정기일내 지급은 전국 평균 27.1%에 불과
- 2) 기관별로는 연합회(평균 30.8%)가 공단(평균 23.1%)보다 양호
- 3) 기간경과후 수령중 4~6일 경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나. 의료보험 진료비 수령실태 ( )안은 구성비

구 분	수령회수			기간 경과 별					
	계	기간내	기간경과후	1-3일	4-6일	7-9일	10-12일	13-15일	16일이상
연합회 평균	1,414	436 (30.8)	978 (69.2)	226 (23.1)	239 (24.4)	145 (14.8)	126 (12.9)	69 (7.1)	173 (17.7)
관리공단 평균	1,332	307 (23.0)	1,025 (77.0)	209 (20.4)	276 (26.9)	180 (17.6)	135 (13.2)	82 (8.0)	143 (14.0)
전국 병원	2,746	743 (27.1)	2,003 (72.9)	435 (21.7)	5151 (25.7)	325 (16.2)	261 (13.0)	151 (7.5)	316 (15.8)

#### 다. 보험자단체 협조요망 사항

- 1) 지급통보서와 통장입금 일자의 기간이(7~10)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급통보서 조속 송부요망.

- 2) 지급 통보서에 입금 지시일자 표시요망.
- 3) 전월 심사자료 보완 요청관계로 지급 보류되었던 분과 차기월 청구분 진료비를 함께 통보하여 병원에서 구분이 어려움으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통부서 송부요망.

- 4) '84. 6월초부터 연합회는 진료과별로 청구함에 따라 1회 청구월분의 진료비가 수차에 분할지급되고 있으므로 청구 월별로 지급요망.

#### 3. 직종 2종 의료보험 지급건의에 대한 회신 접수 ('84. 10. 18)

- 내용: 직종 2종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어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계속 보완운영 및 다각적 노력으로 점차 재정 안정을 기해가고 있으므로 협조요망.

#### 4. 세단구급차 국내개발 건의에 대한 보사부 회신 접수

- 일자: '84. 9. 12(수)
- 내용: 향후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형식 요청이 있을시 충분히 고려.

#### 5. 보사부 차관 초청 조찬회

- 일시: '84. 10. 11(목) 07:30
- 장소: 여의도 맨하탄 호텔
- 참석: 보사부차관, 본회회장, 의협회장, 의보관리공단이사장, 의보연합회회장
- 내용: 의료보험제도의 정착발전을 위하여 공동노력 경주

#### (토의사항)

1. 의료보험약가 유통거래폭에 관한건
2. '84병원 경영세미나 개최 계획(안)